

암 수 수 색 검 증 영 장



【일반용】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번호	2014-13421		죄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성명	용해인		직업	기타
	주민등록번호				
	주거	서울			()
청구한 검사			변호인	6. 20.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	별지 기재와 같다		유효기간	2014.05.31 까지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압수할 물건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작성기간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인 경우)		
일부기각 및 기각의 취지	<input type="checkbox"/> 장소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물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압수대상 및 방법제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압수할 물건"은 범죄혐의 관련부분으로 제한)				

위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침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2014. 05. 24

판 사

집 행 일 시	2014. 5. 26. 11:55	집 행 장 소	1)카카오톤다 fax전화 2)관속장관의 우편함
집 행 불 능 사 유	2014. 6. 11. 17:55		
처리자의 소속 관서, 관직	수원경찰서 수사과	처 리 자 서 명 날 인	● ● ●

주: 일부기각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한다.

[압수할 물건]

범죄 혐의 관련부분으로 제한

- 압수할 물건 압수의 대상 및 방법 제한이 있음(별지)

○ 대상기간 : 2014. 5. 12.부터 2014. 5. 21.까지

○ 압수할 물건

- 1) 피의자 용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 2) 피의자 용혜인의 휴대전화 ●●●●●의 카카오톡과 관련된,
 - 용혜인의 카카오톡 아이디 및 대화명
 - 용혜인과 대화를 하였던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의 계정정보(계정정보는 아
이디, 닉네임, 가입일, 인증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의 맥어드레스가 확인
될 경우 해당 맥어드레스, 접속 아이피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접속 아이피)
 - 대상 기간 동안 용혜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

[수색 ·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 1) 피의자 용혜인의 신체(영장집행 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한함), 휴대전화를
보관,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방, 의류
- 2)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1 H스퀘어 N동 6층 (주)카카오 본사 또는 압수할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센터